

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

등록번호	2014-5	담당부서 작성자	부패방지국 / 청렴총괄과 송영희 / 044-200-7613
정 책 명	부정청탁금지법 제정		
사업개요	○ 추진배경 -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○ 추진기간 : 2012. 5월~ ○ 총사업비 : 해당사항 없음 ○ 주요내용 - (부정청탁 금지)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, 공직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- (금품수수 금지)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여하를 불문하고,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금품수수 금지 - (이해충돌 방지)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, 직무관련자와의 금전차용·부동산 거래 제한,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, 가족채용 제한 등 10가지 이해충돌 방지 장치 규정		
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	□ 추진 경과 및 사업관련자 현황 ○ 관계기관 의견 조회('12.5.7~5.18) 및 입법예고('12.8.22~ '12.10.2) - 관련자 : 법무부 진동균 검사, 권상대 검사, 법제처 이경준 사무관, 국조실 김유일 사무관 ○ 차관회의('13.7.26) · 국무회의 의결('13.7.30), 국회 제출('13.8.5) - 관련자 : 국조실 김기만 서기관, 오정우 팀장, 정무위 김승묵 입법조사관, 홍선기 입법조사관 ○ 정무위 상정('13.12.6), 공청회(7.10), 법안소위 상정('14.12.3 등 5회 심사) - 관련자 : 정무위 소속 위원, 정무위 최시억 전문위원, 홍선기 입법조사관		